

문화재단의 음악회 후원 시 회계처리

Q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대한 후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음악회 팜플렛 등 홍보물에 후원기업에 대한 홍보(업체명 기재), 초대권 증정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후원금 지급절차는
- 문화재단에서 협찬 요청
- 협찬요청에 따른 협찬약정(약정 시 해당 재단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협찬금 지급
이럴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어떤 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팜플렛 등 홍보물에 홍보업체 기재 등의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골집(무허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대상 여부

Q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 소유주 (무허가 건물)에 부속된 토지로
토지등기부등본 상 1983년 4월 10일 재산상속 (접수 1988년 3월 24일)
상속인 : 본인과 사촌들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
(재산세 문의)
1) 시골집이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2) 시골집이 무허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무허가 주택에서 부속토지만 지분 보유시 1가주 2주택
기준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A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
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유권해
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1세대2주
택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A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하여 A가 해야할 조립가공을 당사 외주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업을 진행(4월~5월)하였고 대금은 당사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5월 마감시 A에게 외주업체 지원 인건비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질문인 즉,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외주업체 지출되었던 추가 인건비 품의를 증빙으로 A사에 대금 지급시 공제처리만 하면 될런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A사를 매입자로 하여 발행해 처리해야 할런지 여부입니다.

A

외주업체의 조립가공용역에 대한 최종 대금 부담자가 A이므로, A는 조립가공용역을 제공한 외주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 조립가공용역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Q

- 미국 본사의 자회사인 미국내의 A 회사 소속 영업직원이 한국 관계회사(C사) 고객 관리를 위해 한국에 파견됨.
- 한국내 체류기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B와 A는 관계회사 거래로 B가 C에게서 order를 받고 A에서 제작하여 미국 C사에 납품함.
- 영업사원은 영주권자이며 한국 국적 소유
-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 천안에 건강보험 명목으로 대략 약 \$300을 지원해 달라고 함.
- 영업사원 급여는 모두 A에서 지급함.

미국소속 영업직원에게 한국내 체류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 명목으로 월 \$300지급시 세무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의 세무 issue)

A

미국관계사의 직원이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된 경우인데, 귀사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파견직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